

#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481
----------	------

2026년 3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승미 의원 외 14명
- 나. 제안일 : 2026년 2월 9일
- 다. 회부일 : 2026년 2월 12일
- 라. 상정일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1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승미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장년층 내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사회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생애전환기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지만, 현행 조례에는 이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 한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이 일부 유사함에도 중장년 한부모가족은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간 연계 차원에서도 개선이 요구됨.
- 이에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애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규정(안 제6조의4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6. 2. 20. ~ 2. 24.)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생애재설계 지원 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계층 중장년이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는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범위에 대하여 일정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변화한 사회 환경과 각각 다른 다양한 생애전환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생애재설계 시설 구분 및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1. 50플러스캠퍼스: 중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중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p>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5.·6. (생략)</p> <p><u>&lt;신설&gt;</u></p>	<p>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제</u></p> <p><u>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면제</u></p> <p>8.·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p> <p><u>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제</u></p>

- 본 개정안은 중장년기가 생애전환기라는 점,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원의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각 대상자에 대한 자립·정착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실현을 위한 보완적·지원적 조치로 사료됨.
- 다만, 본 개정안의 체계정합성, 감면 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적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생애재설계 지원

시설의 ‘사용료’는 “프로그램 수강료”와 “기본시설 사용료(시설임대료)”로 구분하고 있어, 모든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인지, “프로그램 사용료”만을 면제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기본시설 사용료’까지 면제할 경우 기관의 고유사업 추진 및 다른 시민의 시설사용 등을 제약할 수 있어 감면할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별표 1] <개정 2024. 1. 18.>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1.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단위	기준금액(원)
인생재설계과정	기초	1시간/1명	시간당 2,000
	심화	1시간/1명	
직업역량개발과정	기초	1시간/1명	
	심화	1시간/1명	
2.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 고
강당	120,000	1회 2시간	1. 야간, 주말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 전액 3. 다음 날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 시는 사용료 전액(100분의 100) 으로 함. 4. 공간 내 부대시설(프로젝터, 음향시설) 사용가능 5. 이용인원은 강당 약 100~120명, 소강당 약 100명 이하, 교육실 및 북카페 약 15~30명
소강당	70,000		
교육실	30,000		
북카페	200,000		
창업·창직 지원공간	1,000원~ 5,000원	㎡당/1개월	1.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름 2. 관리비 별도
연수원	40,000(2인실)	1박	이용시간 : 당일 14시 ~ 다음날 11시 1. 이용시간 : 당일 14시 ~ 다음날 11시 2. 1명 추가시 10,000원 추가
	70,000(4인실)		

※ 사용료 감면은 공공시설의 수익감소로 이어지며, 시설 운영·유지를 위한 재원 충당의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고,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현존하는 예산의 분배·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감면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세부 내용 검토 (안 제6조의4제5호부터 제7호까지)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면제

- 안 제6조의4제5호는 국가와 지자체의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책임을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지원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목적에 고려할 때, 사용료 면제의 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보임.

〈 연도별 한부모가족 현황(서울) 〉

(단위 : 가구, %)

구분	연도	총가구수(A)	한부모가족(B)	비율(B/A)	*저소득한부모(C)	비율(C/B)
서울	2024	4,319,073	280,930	6.5%	27,197	9.7%
	2023	4,298,420	283,702	6.6%	27,758	9.8%
	2022	4,252,134	285,878	6.7%	28,261	9.9%
	2021	4,191,171	290,818	6.9%	29,486	10.1%
	2020	4,126,524	298,389	7.2%	31,425	10.5%
	2019	4,043,957	301,794	7.4%	32,407	10.7%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 연도별 한부모가족 현황(서울) 〉

(단위 : 가구/가구원수)

연도	총계		1)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소계		(A)재가보호		(B)시설보호			
2024	27,197	62,358	3,747	11,977	3,708	11,938	39	39	23,450	50,381
2023	27,758	63,907	3,914	12,804	3,885	12,775	29	29	23,844	51,166
2022	28,261	65,030	4,121	13,718	4,096	13,693	25	25	24,140	51,312
2021	29,486	67,828	4,454	15,050	4,407	15,003	47	47	25,032	52,778
2020	31,425	72,671	6,140	20,501	6,068	20,429	72	72	25,285	52,170
2019	32,407	75,457	8,135	26,778	8,053	26,696	82	82	24,272	48,679

- 다만, 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정할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증가하는 면제 대상자는 이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를 제외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2024년 기준 서울시 한부모가족가구수(280,930가구) 중 0.013%(3,747가구)만이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 또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어 현장 실무자 사이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음.

**〈법령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행정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러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구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어 대상선정기준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면제

- 안 제6조의4제6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다문화가족법”)제3조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이하“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4조를 근거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 다문화 중장년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하고, 생애재설계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관련 「다문화가족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다문화가구 가구원 현황(서울) 〉

(단위 : 명)

구분	가구수	가구원 합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소계	결혼이민자	귀화자
계	78,378	201,591	26,417	77,958	34,246	43,712
				자녀		
				소계	귀화/외국국적	국내출생
				39,659	3,450	36,209
				기타동거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57,557	44,788	12,769

※ 행안부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4.11.1.기준) , '25.10. 발표

- 다만, 면제 대상을 「다문화가족법」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 외국인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조와 정합성을 가지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다문화가족법」과 본 개정안에 따른 면제 대상이 중장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원인지, 중장년 외국국적자 또는 귀화자에 한정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현장 실무자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면제

- 안 제6조의4제7호는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2 및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북한이탈주민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신설하려는 것으로,
  - 관련 법률과 조례는 서울시장에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용료 면제는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료됨.

#### 〈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령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북한이탈주민 서울시 거주 현황 〉

-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거주 및 전입 추이 ※ 출처 : 하나넷, 단위 : 명
  - 코로나19 사유 국경폐쇄로 신규 전입자 감소하다 '23년부터 다시 증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1월
거주	서울 (비율)	6,776 (21.5%)	6,595 (21%)	6,432 (20.5%)	6,366 (20.3%)	6,296 (20.0%)	6,274 (19.9%)
	전국	31,503	31,365	31,314	31,408	31,471	31,481
신규전입	서울	49	25	62	97	65	7
	전국	63	67	196	236	224	224('25.12)

※ '25년 기준 신규전입 인원 : 전국 224명, 서울시 65명(29.0%)

※ 통일부 신규전입 통계는 연 2회 공표('26년 신규전입 통계 : '26.7월 중순 이후 공표 예정)

- 서울시 성별·연령별 현황('26년 1.30. 기준) ※ 출처 : 하나넷, 단위 : 명
  - 여성이 4,338명(69.1%)이며, 50대 1,730명(27.5%)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음

성 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서울	계	6,274	3	91	662	1,162	1,238	1,730	1,388
	여성 (69.1%)	4,338	1	50	380	765	907	1,300	935
	남성 (30.9%)	1,936	2	41	282	397	331	430	453
전국	계	31,481	13	402	1,935	6,529	7,946	9,390	5,266
	여성 (75.1%)	23,627	7	203	1,086	4,690	6,252	7,637	3,752
	남성 (24.9%)	7,854	6	199	849	1,839	1,694	1,753	1,514

- 다만,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정의)와 제4조(기본원칙), 제4조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지원대상을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호(정의), 제3조(시장 등의 책무)에서는 서울시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시행 과정에서 법적 해석 및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중장년층 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법령과 조례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감면 대상과 범위에 대한 법령과 조례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권역별 행정 서비스 수혜자들의 요구와 요청도 상이한바, 다양한 환경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81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이승미, 김성준, 김원태,  
김인제,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철성, 송도호,  
신복자, 왕정순, 이영실,  
임규호, 최기찬, 황유정  
의원(15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장년층 내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사회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생애전환기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지만, 현행 조례에는 이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 한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이 일부 유사함에도 중장년 한부모가족은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간 연계 차원에서 개선이 요구됨.
- 이에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애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규정(안 제6조의4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제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면제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제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생애 재설계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하거나 줄일 수 있다.</p> <p>1.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5. · 6.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u>지원대상자: 면제</u></p> <p>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u>다문화가족: 면제</u></p> <p>8. · 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 음)</p> <p>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u>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북한 <u>이탈주민: 면제</u></p>

#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	생애 재설계 지원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세입감소액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해당 통계자료 등이 적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에 의한 세입감소액은 서울시 관련부서(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의결과 해당 통계자료 등이 적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 ⇒ 다만, 서울시 관련부서에 따르면 일부시설이긴 하나 기존 감면대상의 감면액<sup>1)</sup> 등이 크지 않고, 새로이 규정되는 대상들도 향후 이와 유사한 사용률을 보일 경우 세입감소액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임

[참고]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감면대상 통계 및 1인당 이용률을 활용하여 감면액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려고 하였으나, 수집가능한 통계자료가 제한적이므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기에는 추계합리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추정이 곤란함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주 무 관            손 제 승

☎ 02-2180-7935

e-mail : smclt22@seoul.go.kr

1) [감면대상 유사사례 고려] 서울시 관련부서가 제공한 『공유사무실 입주기업 감면 현황』에 따르면 시기별로 다르긴하나 연간 감면액은 2,500천원 정도이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세입감소액도 크지 않다는 입장임